

## 구의1동 자치회관 「줄바댄스」 강사 공개 모집

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의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6년 9월 28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제1동장



1. 공고기간: 2026. 9. 28.(월)~10. 6.(화) 18:00까지
2. 접수기간: 2026. 9. 28.(월)~10. 6.(화) 09:00~18:00까지
3.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
  - 방문접수: 구의1동 주민센터(평일 09:00~18:00)
  - 이 메 일: jihye8@gwangjin.go.kr
4. 신청자격
  - 국가, 공인기관,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
  -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
  - 기타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경우
5. 제외대상: 피성년후견인,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
광진구 내 담당 프로그램 3개 이상인 경우
6. 강의조건

| 프로그램명      | 강의대상         | 강의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다이나믹<br>줄바 | 성인<br>25명 이내 | 월 · 수요일<br>10:00~11:30<br>(90분) | 시간당 35,000원을 기준으로 하되,<br>우리 구 자치회관 강사료<br>지급기준에 의함 |

7. 협약기간: 2026. 10. 12. ~ 12. 31.까지 \* 이후 평가 등에 따라 1년 단위 재협약

8. 제출서류

- 자치회관 강사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- 강의계획서 1부
-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

9. 선발방법: 서류심사 및 면접

10. 합격자 발표: 개별 통지

11. 문 의 처: 광진구 구의1동주민센터(☎02-450-1202)

12. 기타 유의사항

-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결과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신청서에 연락처, 이메일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입니다.)
- 신청자가 없거나, 적격자가 없어 채용하지 않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할 예정입니다.

## 참고

## 강사료 산출방법

### <지급기준>

1. 강사료는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이 원칙임
2. 수강생 15명 이상일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금액 보전됨
3. 감면금액 보전 금액은 월강사료에서 지급강사료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4. 월강사료에서 지급강사료를 뺀 금액이 감면금액보다 크면, 감면금액만큼만 지원함

### <예시>

| 프로그램명 | 수강료     | 수강인원 | 감면대상인원 |     | 강의시간   | 시간당 강사료 |
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|
|       |         |      | 100%   | 50% |        |         |
| 줌바댄스  | 20,000원 | 15명  | 2      | 12  | 13.5시간 | 35,000원 |

| ㉠감면금액    | ㉡수강료 총액  | ㉢월강사료    | ㉣지급강사료   | ㉤감면금액보전  | 실제 강사료 (㉣+㉤)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60,000원 | 140,000원 | 472,500원 | 140,000원 | 160,000원 | 300,000원     |

### ㉣지급강사료 결정

| 조건                 | 지급 금액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수강료 총액 $\geq$ 월강사료 | 월강사료 전액 지급  |
| 수강료 총액 $<$ 월강사료    | 수강료 총액만큼 지급 |

### ㉤감면금액 보전 결정

|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전 금액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수강인원 $<$ 1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전 없음 (0원)           |
| 수강인원 $\geq$ 15명이고, 월강사료-지급강사료 $\geq$ 감면금액 | 감면금액 전액 지원           |
| 수강인원 $\geq$ 15명이고, 월강사료-지급강사료 $<$ 감면금액    | 월강사료 - 지급강사료 금액만큼 지원 |

### 산출결과

| 항목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액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㉠  | 감면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0,000원 |
| ㉡  | 수강료 총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0,000원 |
| ㉢  | 월강사료 (35,000×13.5h)                     | 472,500원 |
| ㉣  | 지급강사료 (㉡<㉢ 이므로 수강료 총액)                  | 140,000원 |
| ㉤  | 감면금액 보전 (㉢-㉣=332,500 $\geq$ ㉠ 이므로 감면금액) | 160,000원 |
| ★  | 실제 강사료 (㉣+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0,000원 |